

2002. 11. 6. 기술사법시행령개정령공포(대통령제17771호)

○ 주요골자

- 가. 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는 기술사 외에 3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확보하고, 그 운영에 관한 규약을 작성하도록 하며, 그 규약에 포함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(안 제6조의2 신설).
- 나. 규제완화 및 정부위원회의 준비를 위하여 기술사관리위원회

를 폐지함(현행 제11조 내지 제14조 삭제)

- 다. 기술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술사에 대한 경력 및 실적을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,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사에 대한 경력 및 실적 증명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함(안 제18조 신설).

2002. 11 9. 기술사법시행규칙개정령공포(과학기술부령제41호)

○ 주요골자

- 가. 기술사의 합동사무소 개설을 허용하는 등 기술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사법(2001. 12.31, 법률 제6567호) 및 동법시행령(2002. 11. 6, 대통령령 제17771호)이 개

정되어 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합동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보완하는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여성위원회 규정 및 청년위원회규정에 따라 각 위원회를 구성함

○ 여성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

구분	성명	연령	기술종목	현직	전화번호	회원구분	비고
				대학교			
위원장	김지연	46	식품	김지연요리학원 원장 동국대 대학원	02-424-0778	정회원	
부위원장	이미란	41	폐기물처리	(주)대성그린테크 대표 여수대학교	031-755-3388	정회원	

○ 청년위원회 위원장 선임

구분	성명	연령	기술종목	현직	전화번호	회원구분	비고
				대학교			
위원장	김종경	40	건축시공	유정CM건설(주) 이사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	017-233-2671	정회원	